



2021년 [제7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공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부과 기초가 되는 관세평가와 품목분류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거래 형태와 新상품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難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세·무역 분야에 관심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평가」와 「품목분류」라는 새로운 연구분야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논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1일

관세평가분류원장

1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3인 이내 팀 구성 가능)**

2 공모 분야

- 관세평가, 품목분류 2개 부문

3 연구 주제

- [권고주제]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

관세평가 부문

-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을 중심으로 -
- 납세자와 협의 등 **관세평가 절차**에 대한 WTO 협정과 아국 규정 비교 연구
- **수입자와의 협의, 충분한 정보의 교환**을 중심으로 -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연구)
- 지식재산권의 유형**에 따른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요건** 연구
- 사례연구** - 수입물품을 구성하는 (**생산지원**)원재료를 구매자가 **임차**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 -

품목분류 부문

- HS 2022 시행으로 신설된 **특게호 규정 분석** 및 품목분류 **변경 필요사례** 연구
- 산업분야별** 품목분류 규정 정리 및 연구
- 제8537호**에 분류되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판” 분류기준 연구
- 신선·건조·냉동한 과실 및 견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

- 각 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 4 참조**

3 연구 주제

- [자유주제] 권고주제 외에 연구자가 자율적 선정
 - ※ 연구자가 선정한 주제가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와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논문 심사·평가 시 권고주제를 선택한 연구논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논문 형식 및 분량

- A4 용지 **25매 내외** 서술식 논문 (小논문, 연구보고서 형식도 가능)
- 별첨 논문 작성 요령을 참고(별첨 5 참조)하되, **자유형식 가능**
- ※ A4 용지 25매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전체 분량(별첨 또는 참고자료 제외)이 **50매를 초과**할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5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www.관세연구공모전.kr, 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를 통해 제출(별첨 1 참조)
- 참가 신청 기간 : 2021. 4. 1.(목) ~ 4. 30.(금)
- ※ 참가신청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최종 연구논문제출)가 가능**하나, 연구논문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연구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기간 이내에**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관세평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손동희 관세행정관
042- 714-7503/ legendhee@korea.kr
 -  (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1과 송민수 관세행정관
042- 714-7534/ csong1978@korea.kr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송왕근 선임연구원, 이아이린 주임연구원
02-3416-5196, 5109/ swg3814@hanmail.net

6 논문 제출

- 제출 기한 : 공고일부터 **9.30.(목)** 까지
- 제출처와 제출 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7 시상 및 우수작 발표회

- 관세평가, 품목분류 **부문별** 시상
 - 대 상(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2)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우 수 상(3)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200만원
 - 장 려 상(6)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 **학생**(석사과정 이하, 대표연구자 기준) 참가자의 경우 평가점수 **5%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연구 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관세청 공무원** 참가자의 경우 **상금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우수작 발표회 : 추후 공지(별도 통보 예정)

8 기타 사항

- 연구윤리서약서(☞ 별첨2)와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별첨3)를 제출해야 함
- ※ 서약서 및 동의서는 참가 신청 시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동의 여부 선택)
- 제출된 연구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출된 연구논문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논문과 유사한 연구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공모전에 제출된 연구논문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논문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입상이 취소됨
- 본 공모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연구논문은 결과 발표 후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받을 것을 권장함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예시)

대표자

▪ 성명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관세대학교 000학과 부교수		
▪ 부문	관세평가/ 품목분류 택 1	▪ 연락처	010-1234- 5678	▪ 이메일	000000@ customs.go.kr
▪ 주소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00동 0000동				
▪ 논문주제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 방안				
▪ 연구논문	연구개요 작성				

팀원

▪ 성명 ①	김길동	▪ 소속	관세컨설팅(주)	▪ 직위	컨설팅본부장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 성명 ②	박길동	▪ 소속	관세법인 대전	▪ 직위	관세사
▪ 전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소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 참가신청서

대표자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부 문		▪ 연락처	▪ 이메일
▪ 주 소			
▪ 논문주제			
▪ 연구논문			

팀원

▪ 성명 ①		▪ 소 속		▪ 직 위	
▪ 전 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 소					
▪ 성명 ②		▪ 소 속		▪ 직 위	
▪ 전 공		▪ 연락처		▪ 이메일	
▪ 주 소					

연구 윤리 서약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표절, 위조, 변조, 사전 이중 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이 확인될 경우, 귀 원에서 정한 방침에 의거하여 수상자격 박탈, 상금반환 등 수상 취소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1. . .

○ 소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연구논문 활용 동의서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아래 본인은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에 참가하면서, 제출된 논문이 관세청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 편집 및 제도에 반영되는 것에 동의함을 서약합니다.

2021. . .

○ 소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연구논문 권고주제 세부내용

관세평가 분야

주제 1 수입 후 가격 변경에 대한 합리적 관세평가 처리방안 -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를 중심으로 -

[연구배경]

-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when sold for export, 실제적인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는 거래)란 특정 시간 기준(a time standard externa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의 유형을 나타내는 것임
 - 본 주제의 쟁점은 다단계 거래(series of sales)에서 수입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발생한 '마지막 판매(last sale)에 기초한다는 WCO 예해 22.1과는 별개임

- 수입물품이 '하나의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수입 전이나 수입 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 실제지급가격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paid or payable)' 가격으로서 수입신고 시점에 반드시 지급되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관세 채권의 확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수입신고 시점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지급가격 결정시 고려되지 아니함(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 하지만, 상업적 관행 상 어떠한 계약의 경우 가격이 잠정적으로만 결정되고 최종 가격은 해당 계약 자체에서 정하는 특정 요소(certain factors)에 따라 수입 후 결정되는 경우, 즉 가격조정약관(Price Review Clause)이 있는 경우에는 동 PRC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함 (WCO 예해 4.1, 고시 제16조제2항 단서)

- 우리나라는 동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에서 3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최종거래가격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을 것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될 것
 - 다. 수입 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control)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할 것
 - 위 3가지 요건은 미국 관세청(CBP)의 Ruling(HRL 542701, 1982.4.28.)을 반영한 것임

- 우리나라의 현재 평가 실무에서는 위 3가지 요건 중 마지막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 후 재판매되는 가격에서 특정 비용이나 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변수인 “재판매 가격”이나 “이익”을 거래당사자인 ‘구매자’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하지 않음
- 또한, WCO 예해 4.1에서는 ‘최초 발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인도된 플랜트 등(turn key 방식 거래)의 최종 노무비, 재료비, 간접비 등의 증가나 감소를 인정하는 합의된 계산식’을 기초로 인정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 ‘거래 당사자의 통제’를 상기 “재판매 가격”의 경우와 같이 엄격히 해석하는 경우, 해당 노무비, 재료비, 간접비 등은 판매자가 ‘통제’ 가능하다고 보아 가격조정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WCO나 일본 등 사례에서는 해당 가격조정약관(PRC)의 요건을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 WCO 관세평가 핸드북 “11. The price has been only provisionally fixed and will be adjusted either up or down, **depending on the profit margin realized on the resale of the goods.** In this case, according to Commentary 4.1 in the Compendium,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imported goods must be the total final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 일본 관세평가 303 “61. 손익을 판매자에게 환원하는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 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거래’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이익과 판매자에게서 받는 손실액을 가감한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된다. ...”
- 상거래 관행 상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수입 후 가격의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상 처리 방안 검토 필요

[연구방향]

-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가격조정약관’의 상관행 분석
- ‘수입 후 가격의 변경’ 및 ‘가격조정약관’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관련 규정 및 실무 사례 수집 분석
-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 ‘가격조정약관’ 인정 기준 마련 및 이를 통한 ‘수입 후 가격 변경’의 합리적 관세평가 방안 검토 (현행 법령 제·개정 방안 포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 등

[연구배경]

- WTO 관세평가협정은 과세가격 결정(평가) 방법 뿐 아니라 그 결정 과정에서 납세자와 세관당국 각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양자 간 **협의(communication)** 과정과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의 교환, 즉 관세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협정 상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납세자와 세관의 권리와 의무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 제1조제2항(a) ‘특수관계 영향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지할 의무’, ‘수입자의 답변할 기회 보장 권리(의무)’, ‘서면 통지 의무’ 등 (제1.2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예해 14.1 참조)
 - 거래가격 부인 및 대체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관련
 - 일반서설 제2항 ‘세관과 수입자 간 협의 과정’,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정보 교환’
 - 제6조 ‘타국 거주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강제할 수 없음’, ‘생산자와 타국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 검증 가능’, 제6조에 대한 주해 제2항 및 제6항 ‘생산자 제공 정보 이외 산정가격 결정에 사용된 정보, 계산 근거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할 의무’
 - 제7조제3항 ‘수입자 요청 시, 합리적 방법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과 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을 수입자에게 서면 통지할 의무’
 - 제1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서면 설명 받을 권리’
 - 결정 6.1 ‘의심 시 추가적인 설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권리(의무)’, ‘최종 판단 전 의심의 근거를 수입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의견 제시할 기회 제공 의무’, ‘최종 결정과 근거를 수입자에게 서면 통보할 의무’
- 협정 상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정보 등의 처리 및 사용 원칙
 - 관련 정보 등의 처리
 - 제10조 ‘관세평가 목적 상 제공된 정보의 비밀 보호 의무’
 - 제12조 ‘법령, 사법판결 및 행정 결정의 공표’
 - 부속서 III 제6항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 및 정확성 조사를 위한 수입자의 충분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 (권고의견 19.1 참조)
 - 관련 정보 등의 사용 원칙
 - 제8조제3항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가산’
 - 제2,3조에 대한 주해 제5항 ‘거래단계 등 조정을 위한 입증된 증거’(예해 10.1 참조)
 - 제5조에 대한 주해 제6항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한 이윤 및 일반경비’, 제11항 ‘추가가공 가치 계산을 위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 제6조에 대한 주해 제2항 ‘생산자가 제출한 생산에 관한 정보’, 제6항 ‘생산자 제공 정보 이외 산정가격 계산에 사용된 정보 등의 수입자 통보 의무’
- 제8조제1항(b)(ii)에 대한 주해 제3항 ‘배분방법 결정시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의 사용’
- 제8조제1항(b)(iv)에 대한 주해 제1항 ‘구매자의 상업 기록체계 내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자료의 사용’
- 부속서 III 제6항 ‘제출된 진술, 문서 또는 신고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수입자의 충분한 협조를 요구할 권리’ (권고의견 19.1)

□ 우리 관세법령은 협정 상 세관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정보 등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 일부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또는 협정 취지와 맞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있음
-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Panel Report에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뿐 아니라 그 결정 절차 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
 - Thailand – Customs and Fiscal Measures on cigarettes from the Philippines Report of the Panel(WT/DS371/R, 2010.11.15.) 참조
 - ☞ 관세평가 절차, 납세자와 세관의 권리·의무,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정보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해 협정 및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관련 규정 정비 필요

【연구방향】

- 협정 및 관련 WCO 기술문서 등의 관세평가 절차 규정 분석
- WTO Panel report(WT/DS371/R, 2010.11.15.)의 시사점 분석
- 해외 선진국 규정 분석
 -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평가 규정의 “sufficient information”에 대한 규정의 의미와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 관세평가 규정 상 평가 절차, 납세자와 세관의 권리·의무, 관련 정보의 처리 방법 등 분석
- 거래가격의 부인, 대체방법(법 제31 ~ 35조)의 순차적 적용 검토, 최종 과세가격 결정 등 관세평가 단계별 납세자와 세관의 협의 절차 마련을 통한 불복·쟁송 방지 방안 연구
- 협정 및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절차 규정 정비 방안 검토

[연구배경]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선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제31조부터 제35조(제2~6방법, 대체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제2~5방법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제35조(제6방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제6방법 적용의 원칙) 합리적 기준이란 **협정과 GATT 제7조의 원칙과 일반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으로서, 제1~5방법을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고,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며, **수입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사용하되, ‘자의적·가공적 가격’ 등 금지된 가격의 사용을 배제하는 한도에서 **세관당국과 수입자 간 협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2020.10.7.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한다’는 협정 제7조 제1항의 내용 반영
- (제6방법 적용의 현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실무상 제2~3방법의 요건을 신축 적용하는 경우와 제4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대부분의 제6방법은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특수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현실임
 - 동 특수물품 평가규정은 대부분 예시 규정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무상 이 방법들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의 합리적 평가방안)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과거 제4방법(또는 제6-4방법)을 적용해오던 관행이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및 거래의 특징으로 인해 동종동질(제2방법), 유사물품(제3방법) 뿐 아니라 동종동류물품(제4방법)과 이를 국내판매하는 비교대상업체들을 선정하기 어렵고, 해외 수출자의 원가자료를 입수·검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제6방법에 따른 평가기법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함
- (특수물품, 신종거래 등의 합리적 평가방안)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 등 특수물품은 시행규칙에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물품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또한, 무상수탁 가공 원재료, 국내 유지보수 서비스와 수입물품이 결합된 거래(재화·용역 결합 거래), IT 기술 발전 등으로 완전 판매되지 않는 Pay per Use 방식 거래 등 새롭게 등장하는 거래형태에 따른 수입물품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연구가 필요
 - Pay per Use 방식 거래 관련 조심 2016관189(17.7.27.) 등, 재생물품(Refurb) 관련 대법원 2018두56794(부산고법 2017누24196) 판결, 재화·용역 결합거래 대법원 2018두57933 판결 등 참조

- 아울러, 제6방법은 **최종적인평가방법(Fall-back method)**으로 **수입국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수입자와의 협의 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정답이 아닌 **최선의 解答**을 찾는 방법)을 찾아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에도,
 -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 의무를 지우는 법원의태도로 인해 합리적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 존재
 - 관세조사 당시 입수된 자료에 근거할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에도, 불복·소송 과정에서 추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 방법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가격 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 있는지의 문제

[연구방향] 다음 연구과제 중 일부 선택 가능

- **재화·용역 결합 거래, Pay per Use** 등 새로운 거래형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제6방법 과세가격 결정 사례 연구
 - 유지보수 서비스용 수입물품 등 용역과 물품이 통합된 거래(재화·용역 결합거래)
 - 수입 후 사용횟수 등에 따른 추가지급이 수반되는 거래(Pay per Use)
 - 무상 수탁가공 원재료 등
 - ※ 관련 국내 관세조사 사례, 불복·쟁송사례, 해외 사례 등 연구
- 특수관계 영향으로 제1방법 배제된 **이전가격에 대한 합리적 평가방안** 사례 연구
 - 특히, 제6-1방법 평가방안 연구 (특수관계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이전가격을 평가하는 사례 연구)
- **‘국내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에 기초’**한다는 제6방법 원칙의 의미

[연구배경]

-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또한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물품에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이용된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에는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일부 판매자와 권리권자가 다르거나 특정한 경우에 물품의 가격과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분리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Customs Valuation)시,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대가(권리사용료)가 해당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해당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관세 과세가격(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 지식재산권은 해당 권리의 종류에 따라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하 이 3가지 권리를 통칭하여 ‘특허권등’이라 함), 상표권 및 저작권 등으로 구분되며, 각 해당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 및 관리되고 있음
 - 이 중 어떤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특허권** 등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식재산권을 사용(실시)하지 않고서는 해당 물품을 제조할 수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관세법 상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인 ‘관련성’과 ‘판매조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며,
 - ‘자기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상표권**은 수입물품과 관련(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라도,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해당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 ※ 미국 관세법 시행령(C.F.R) §152.103(f)는 ‘수입물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다루는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과세하되,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3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는 일반적으로 구매자의 판매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허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서는 해당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각 권리의 종류와 효력,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전용실시(사용)권 및 통상실시(사용)권의 허여와 대상, 침해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각 지식재산권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허여되거나 허여되지 않는 행위(권리)가 다르게 허여될 수 있으며,
 - 이는 관세법 상 권리사용료의 가산 요건인 '관련성'과 '판매조건' 충족 여부 판단에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필요

【연구방향】아래 연구주제 중 선택 가능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각 지식재산권의 특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종류, 효력 및 범위 등에 대한 연구 (관세법 상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인 '관련성', '판매조건'과 관련하여...)
 - 특허권,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에서 효력 제한(시간적 제한, 장소적 제한, 내용적 제한)에 대한 비교 및 사례 검토
 - 전용실시권(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실시권(또는 통상사용권)에 따라 과세가격 가산 요건의 차이 및 사례 검토
 - 저작권법에서 저작권 종류(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에 제한·양도 등에 따른 관세평가 상 차이 검토
- 지식재산권별 수입물품과 과세요건(관련성, 판매조건) 상관관계 비교 분석
 - 유권해석 사례, 행정심판 결정 사례, 소송판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별 비교
- 의약품 및 생명공학, 석유화학산업 등 특정 산업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라이선스 계약 분석 및 '권리사용료 가산 요건' 분석
 - 물질특허, 방법특허 등 특허(발명) 유형별 비교 분석 등

[대상사례]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기재부관세협력과-241호, 2005.2.17.)

■ 질의

- 수입물품인 VA촉매의 주요 구성 원재료인 귀금속(금, 팔라듐 등)을 수입자가 임차하여 이를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여 제조 후 수입하는 경우,
 - 무상 제공한 귀금속을 생산지원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또는 주요 구성 원재료가 임차되었으므로 임차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임차 계약서 상 귀금속 가격이 기간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점의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거래 방법

- 수입자는 미국 수출자에게 촉매 제조를 의뢰하면서 독일 귀금속 임대업자와 귀금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귀금속을 수출자에게 무료로 공급
- 팔라듐은 1년 단위로, 금은 3개월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귀금속의 국제 매매시세(뉴욕시장의 월평균가격)에 따라 임대차계약 연장(임차기간 만료(통상 2년) 후 임대업자에게 반환)
- 수출자(촉매제조자)는 공급받은 귀금속을 사용하여 VA촉매를 제조하고 완제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하고 구매계약서에 촉매제조비용 및 담체비용을 기재하고, 귀금속 임차료는 별도로 표시
- 촉매의 원재료별 가격구성비는 귀금속의 시세가 변동됨에 따라 연동

■ 회신

- VA 촉매는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되었으므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0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물품특성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며,
- 한편, 수입물품 중 임차된 귀금속에 대한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귀금속의 가격을 가산하되,
- 일정기간별로 임차계약에 의하여 귀금속의 기준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수입시점에 유효한 임대차계약서상의 귀금속의 가격을 가격산정의 기초로 결정하되, 국제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함

【주요 쟁점】

- 구매자가 생산지원 물품(주요 구성요소)을 임차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결합한 완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를 ‘수출판매’되지 않은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권고의견 1.1(가장 넓은 의미의 판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규정에 이러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완제품인 VA 촉매를 임차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 사례에서 주요 논거로 삼은 ‘주요 구성요소’의 범위 불명확
- 쟁점 사례를 ‘수출 판매’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생산지원 물품인 귀금속의 가격(value)을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차료’로 할 것인지, 해당 귀금속의 ‘가치’(시세)로 할 것인지 여부
 - 임차한 생산지원의 가격을 ‘임차료’로 하는 협정 주해는 제8조1(b)(iv) 즉, 생산지원용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사례연구 5.2에 따르면 제8조1(b)(ii), 즉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등에도 적용됨), 우리 관세법 시행규칙은 생산지원 요소 4가지 모두에 대해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생산지원의 가치를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폐촉매를 재생하여 반복사용하는 경우 ‘임차한 귀금속’이 해당 수입물품에 정확히 결합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며, 임차료 또한 기간에 따라 특정 일자의 국제시세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연구방향】 쟁점사례의 시사점 및 평가 규정 개선 방안 등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의 범위
 - 생산지원 물품이 결합된 수입물품에 있어 ‘수출판매’ 해당 여부 검토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의 의미 및 해석에 대한 검토
- ‘생산지원’의 가격(value) 산출방법 연구
 - 생산지원의 4가지 범주에 따라 그 생산지원 가격(value) 산출 방법 차이
 - 협정 주해 및 WCO 예해 24.1, 사례연구 5.2 등과 우리 관세법령 차이점 및 개선방안 연구

[참고사례] 관세청 평가 47221-411(1999.12.9.),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2066호(2014.7.10.) 등

주제1 HS 2022 개정으로 신설된 특게호 규정 분석 및 품목분류 변경 필요사례 연구

【연구배경】'22년 HS 협약* 개정에 따른 관세법 관세율표 전면 개편예정('22.1.1.)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부속서 '품목분류표' 포함)

- HS 협약개정에 따른 관세율표 분류체계 변경의 경우, 변경고시 절차 없이 운영되다 보니 개정 前 · 後 동일 ·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가 상이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음
- 특히 금번 개정에는 2017년과 달리 IT 등 첨단기술이 반영된 **新제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례 상이에 따른 품목분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 수출 주력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신설 반영
- 따라서 '22년 HS협약 개정사항의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분류사례를 분석 · 정리하고자 함

【연구방향】주요 개정품목(신상품)에 대한 분류사례 연계 및 분석

- (제8524호)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호 신설
 - 현행 : 제8512호, 제8525호, 제8529호, 제8531호, 제8537호, 제8548호, 제9013호, 기타 제8517호 · 제8473호의 부분품 등에 분류
- (제8539.51호)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소호 신설
 - 현행 : 제8539.90호, 제8543.70호, 제9405.10호, 제9405.20호, 제9405.30호, 제9405.40호 등에 분류
- (제8541.51호)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transducer)” 소호 신설
현행 : 제85류, 제90류 센서 등에 분류
- (제2404호) “신종 궤련형 전자담배(EHTP)” 호 신설
 - 현행 : 제2403.91호, 제2403.99호, 제3824.99호 등에 분류
- (제3006.93호) “위약 및 맹검 임상시험키트” 소호 신설
 - 현행 : 제1704호, 제2106.90호, 제2202.99호, 제3004호, 제3824호 등에 분류

【제출과제】 연구분야를 선택하여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신설 특게호에 품목에 분류 가능했던 HS 연계표 정리하고, 변경대상 사례를 <붙임1> 양식으로 정리

- <붙임2> 개정내용을 참조하여 품목번호가 변동될 주요 품목(위 5개 품목)에 대한 분류 사례(~2021년 현재)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
※ 분석대상 :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품목분류 국내사례

붙임 1

정리양식 [예시]

대상 물품	참조번호 (시행일자)	품목번호 (HSK)	HS 2022	품명	물품설명	변경사유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분류 3과○○호 (18.10.24)	8529.90- 9921	8524.91	LCD MODULE FOR PC MONITOR; LSM340YP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개요 - TFT-LCD 패널 (TFT line에 on/off 전압을 인가하는 Gate IC 소자를 내장), POL(Polarizer), FPCB, Source Driver IC로 구성된 LCD 모듈임 ○ 물품사진 	<p>○ 본건 물품은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정을 주입한 TFT-LCD 패널로, FPCB와 Driver IC 등이 결합되어 제9013호에서는 벗어남, 그 외 영상신호 변환에 관여하는 스케일러 IC 등과 같은 소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 8524.99호로 이동이 타당</p> <p>- 관세율표 제85류 주7호(신설) 및 제 8524호 해설서 등</p>

붙임2

HS 2022 개정내용 발췌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번호	품명 (HS 2022)
8524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 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4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것
8524	11 액정의 것
8524	12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	19 기타
8524	9 기타
8524	91 액정의 것
8524	92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	99 기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

품목번호	품명 (HS 2022)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	5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	51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8539	52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품목번호	품명 (HS 2022)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8541	5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	51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	59 기타

 신종 결련형 전자담배

품목번호	품명 (HS 2022)
2404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품·니코틴 대용품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니코틴을 함유한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
2404	1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물품
2404	11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한 것
2404	12 기타(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404	19 기타
2404	9 기타
2404	91 경구(經口)용
2404	92 피부 투여용
2404	99 기타

【연구배경】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숙지해야 하는 HS협약상 부류의 주, 호의 용어, HS해설서의 내용이 복잡하여 배경지식 없는 일반인의 접근에 한계

-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제정된 후 많은 시일이 지나 실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상이한 경우가 있음
- HS협약, HS해설서 조문 해석시 여타 규정과의 관계, 관련 산업에 대한 지식 등 사전에 숙지해야하는 내용이 다양

【연구방향】 자율적으로 범위(최소 품목분류 4단위(호) 1개 이상)를 정하여 다음 사항을 연구하여 정리

- (산업소개) 연구범위와 관련된 산업분야에 대한 주요품목의 제조공정, 제조장비, 투입 재료·부분품, 산업동향 등 소개
- (쟁점세번 정리) 연구범위와 쟁점발생 가능한 품목분류 규정 검토
 - 부류의 주규정상 제외규정 및 관련된 HS해설서 분석을 통해 쟁점발생 가능한 품목 번호 및 우선 검토순위 정리
 - 예) 제8418호 : 제외규정(제16부 총설, 제16부 주1호, 제84·85류 주1호 등)
 - 제2309호 : 제23류 주1(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 (용어정리) 연구대상으로 정한 범위의 주 규정, 호의 용어, HS해설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사용된 용어(국문, 영문)에 대해 품목분류 규정상 정의 및 산업용어사전상 정의(사진 포함)를 정리하고, 산업계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를 소개
- (규정해설)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 일반인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에 대해 그 취지 및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설
- (사례소개) 관세 품목분류 위원회 등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사례별 분류논리 및 중요 체크포인트를 해설

※ 참고자료(관세청 발간) : 산업별 HS가이드, 관세율표 용어 가이드, 쉽게 풀어쓴 HS해설서 등

【연구배경】

-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 등은 응용분야가 다양하고 개념이 광범위하여 여러 종류의 물품이 분류되는 호이나 그 구성요소, 기능, 용도에 따라 타 호(제8536호, 제8538호)에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분류시 혼란이 있음
- 제8537호 호의 용어에서 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꼭 장착하고 있지 않더라도 전기제어가 가능한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제8537호의 호의 용어에 대한 적정성 연구 필요

【연구방향】

-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의 개념 및 정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
- 제8537호의 호의 용어(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에 분류되는 품목분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예 : 터치입력방식의 MEMBRANE 방식의 키 유닛의 경우 FPCB, 카본 접점, 화장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기 신호의 전기제어 기능을 하는 물품이나 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제8537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례 발생
- 기타 경합 가능한 호의 연구 및 구분기준 마련
 - 제8537호의 호의 용어(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8536호 또는 제8538호 경합시 구분기준 모호

【연구배경】

-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신선 또는 건조과실 및 견과류」와, 상대적으로 저세율이 적용되는「냉동 과실 및 견과류」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 정립 필요
 - [대추] 신선 0813.40-2000 / 건조 0813.40-2000 / 냉동 0811.90-2000
 - [밤] 신선·건조(껍질有) 0802.41-0000 / 신선·건조(껍질無) 0802.42-0000 / 냉동 0811.90-1000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 냉동 농림수산물 중 ‘조기’·‘오징어’·‘고추’·‘감’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은 있으나 ‘대추’, ‘밤’ 등 냉동 과실 및 견과류에 대한 적용 기준은 없음
 - 시행규칙 명시, 농림수산물의 수분함량 기준도 각각 상이함
- 특히, 물품 특성상「부분 건조된 과실을 냉동」한 상태도 있을 수 있는데, 품목분류 기준인「수분 함량, 물품상태 등」이 공시된 것이 없어, 품목분류에 어려움 있음
 - [예]화주가 0811.90-2000호(‘냉동 대추’ ; 기본세율 30%)로 알고 수입한 대추가, 0813.40-2000호(‘건대추’ ; 미추천시 611.5% 또는 kg당 5,800원 중 고액)로 분류시, 고관세율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입통관 불가능

【연구방향】

- 신선·건조·냉동 과실 및 견과류에 대한 각각의 분류기준에 대한 내·외국 사례 조사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연구 가능)
 - 건조한 과실 등의 물품 상태 또는 특성 조사 등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류기준 마련
 - [예] 신선·건조·냉동한 것의 구체적인 수분함량 기준 명시(건조한 것을 냉동한 경우에는 ‘건조’로 간주 포함)

연구논문 작성 요령

(참조용)

I 원고 작성 일반요령

1. 원고는 A4용지에 '아래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구분	위/아래	오른쪽/왼쪽	머리말/꼬리말	제본
여백	각 20mm	각 30mm	각 8.5mm	0mm

2. 원고는 표지, 목차, 본문, 각주, 표 및 그림,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1) 표지는 원고의 제목(영문 표기), 필자의 이름(영문. 한자 표기), 소속, 직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메일주소) 등을 기재한다.
 - 2) 목차는 1, 1, 1), (1)의 순으로 표기한다.

제목 및 표, 그림 등의 번호 전개

구분	전개번호	크기	구분	전개번호	전개번호 위치
장	1	16	표	<표 1>	표 제목 앞, 표 위 가운데
절	1	13	그림	[그림 1]	그림 제목 앞, 그림 위 가운데
항	1)	12	수식	(1)	수식 뒤(우측 끝)
목	(1)	12			

3) 본문은 새로운 면에서 제목을 쓴 후 시작하며, 글꼴 신명조.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한다.

글자 크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구분	크기	비고(표기)
표지의 제목	16	진하게	부록제목	12	<부록 1>
본문의 소제목	13		수식	12	(1)
본문 내용	12		소속	10	
성명	12		각주	10	1)
요약	12	<요약>	표 속의 글	11	
표제목	12	<표 1>	그림 속의 글	11	
그림제목	12	<그림 1>	부록 속의 글	11	

- 4)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관련된 논의의 소개가 필요한 경우에 본문 면의 하단에 아래의 출전표시요령, 인터넷 자료인용, 참고문헌 작성 요령 등을 준용하여 간결하게 표시하며, 글꼴 중고딕. 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30으로 한다.
-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당한 위치에 <표 1> 혹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고, 출처는 표나 그림의 바로 아래에 “출처 : ”라고 쓴 후에 제시한다.

표 그리기 요령

구 분	선 모양	비 고	구 분	선 모양	비 고
맨 위 / 맨 아래	—————	진한선	내 부	보통선 또는 점선
왼 쪽 / 오른 쪽		투명선	표두 아래쪽	—————	이중 실선

- 6)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 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참고 문헌의 작성은 아래의 ‘참고문헌 작성 요령’을 참고한다.
3.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는 교신저자를 표기할 수 있다.
4.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5.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6.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7. 외국 지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외래어 표기법의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고,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째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 명을 부기한다.
8.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 명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예 : 유럽 통화 제도(EMS : European Monetary System)
9.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을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 표시(source reference)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출전 표시 요령’을 참조한다.

II 출전 표시 요령

1. 출전은 본문 및 각주의 적당한 위치에 괄호하고 그 속에 저서명, 저자명, 출판 연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2. 구체적인 예
 - 1) 저자 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 연도를 표시한다.
예 : 홍길동(1996)
단,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 연도를 함께 표기한다.
예 : 무어 (Moore 1966)
 - 2) 저자 명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우는 성명과 출판 연도를 괄호 속에 표기한다.
예 : (홍길동 1966)
 - 3) 면수는 출판 연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숫자로 표기한다.
예 : (Evans 1979, 56)
 - 4)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예 : (한배호 외 1991, 35-36)
 - 5) 한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예 : (Cumings 1981, 72; 허생 1990, 35; 홍길동 1990, 18)
 - 6) 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月/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月),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 (XX일보 93/04/08, 5)
 - 7) 간행 예정인 원고는 ‘未刊’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연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을 쓴다.
예 : Tilly(forthcoming); ...홍길동(미간); ...Jones(n.d.)
 - 8)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 (XXX연구원 1992)

III 인터넷 자료 인용

1. 제작자, 제작 연도, 주제명,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상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 (검색일 : 1998. 10. 20)
2. 분량이 많아 인용 부분이 페이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오른쪽 바의 위치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1/10 Bar)의 뜻은 인터넷 전체 자료의 십분의 일에 해당한다).
예 : 홍길동.1996.“한국의통일정책.”<http://taejon.ac.kr/kildong/kk0101.html>(검색일 : 1998. 10. 20). (1/10 Bar)

IV 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순으로(이 부분을 삭제함) 배열한다.
예 : 홍길동. 장길산. 1996. 『조선 의적사 연구』. 서울: 개벽사.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1964. 『現代政治の思想と行動』. 증보판. 東京: 未來社. 린위쥘 (林昱君).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 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보고서, 간행물, 서적 등인 경우는 꺾쇠(「 」)로 표시한다.
 - 2) 페이지는 숫자만 표기한다.

5. 저자표기

1) 저자 1 인인 경우

예 : 장서방. 1993. 『변화하는 유권자 : 14대 총선의 분석』. 서울 : 믿음사
.Tillich, Paul. 1951-63. Systematic Theology. 3 vol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
에서는 공동 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예 : 홍길동. 허생.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 XX연구원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이돌석 외.
1992. 『공공 선택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선택사.

6. 학위 논문 표기

홍길동. 1992. “조선 후기 민란의 도덕 경제.”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7. 편집된 책 속의 글 표기.

1) 편집자가 밝혀진 경우

예 : 장노자. 1991.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김서방. 연놀부. 이어도 편, 『국가 이
론의 재조명』, 231-263. 서울 : 호박사. 2) 편집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예 : 관중. 1992. “자본주의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 : 몇 가지 이론적 문제.” 『조
직자본주의의 정치』, 261-306. 서울 : 집현연구소.

8.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예 : Bell, Daniel 저. 홍길동 역. 『후기산업사회의 도래』. 서울 : 개벽사

(작성양식예시)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Study on the scope of assessment to Post Compensation
Adjustmen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

< 연구자 >

홍길동(洪吉童), 관세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010-1234-5678, aaaa@customs.go.kr

김길동(金吉童), 관세컨설팅(주), 컨설팅본부장
대전시 서구 청사로 281
010-5678-1234, bbbbbb@customs.go.kr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II. 선행 연구 검토	4
1. 관세평가 제도의 도입	5
1) GATT	6
2) WCO	7
참고문헌	8
요약	9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 관세당국의 협의체인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¹⁾에서는

<표 1-1>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현황

(2015년 3월 현재)

도입 시기	설치 항구	설치 대수
'02-'05	부산항	4대
'02-'05	인천항	3대
'03	광양항	1대
'03	평택항	1대

출처 : 관세청 내부자료 인용

1)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기구이다. 현재 전 세계 총 174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세 커뮤니티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홈페이지 www.wcoomd.org

[그림 1-1] AEO 공인심사 절차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관세, “원활한 국제물류를 위한 한일제도 비교연구 및 향후 세관의 미래 -한일 AEO 제도를 중심으로 -”, 관세청, 2011.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AEO종합심사통합(Ⅱ)」, 2009.
- 관세청, 「AEO 가이드북」, 2009.
- ,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1.
- , 「선진 Supply Chain Security 운영체계 연구·분석」, 2007.
- 우성구·김재명, “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일본기업의 AEO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7권, 한구무역상무학회, 2010.

2. 외국 문헌

- Barry Brandman, "C-TPAT Part II: Strategics for obtaining and keeping C-TPAT certification security brief", DE Velocity, 2006.

다국적 기업의 사후보상 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요약)

오늘날 어떤 나라도 국제무역(國際貿易) 없이 자급자족만으로 필요한 재화를 충족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동안 우리 인류는 국가 간 무역을 통해서 국부(Wealth)를 창출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나라에서 무역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무역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필요한 물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그 대상인 자본, 상품,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를 말한다. 그 중 상품을 대상으로 한 무역을 상품무역이나 유형무역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상품무역은 형태가 있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 거래이기 때문에 외국물품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내국물품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는 상품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關稅廳)과 세관(稅關)이라는 조직을 통해 상품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을 이동을 적정하게하고 밀수 단속 및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이다. 이처럼 관세청과 세관은 관세징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꼭 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